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 교류를 주도하여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도시와 건축을 매개로 세계 도시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시민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도시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‘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’를 추진하고 있으며
- 나.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예정임
- 다. 이에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비엔날레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(재)서울디자인재단
- 관련법령
 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조례
 -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
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 사업(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)
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운영
-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
-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다각적 홍보
-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방안 수립 및 운영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및 도시건축의 진흥·교류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서울의 디자인 등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따라 2017년도 제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음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·건축·조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활용한 성공적 사업수행 및 서울디자인재단 조직의 장점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조 례
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)①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설치하거나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-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6. 디자인의 국내·외 교류사업

다. 기 타 :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

제4조(사업의 범위)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6. 디자인의 국내·외 교류사업

8. 기타 출판업, 주차장운영업, 디자인상품 도·소매업 및 수출,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,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(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)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라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마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 황재철 (☎2133-7622)